



제2014-063642-01 호

안 전 인 증 서

(주) 센코

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3 (외삼미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GAS DETECTOR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SI-100C (Ex d IIC T5) / 15-KB2BO-0063

인 증 기 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54호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

본 인증서는 '(주)센코,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3 (외삼미동)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

2. 제품개요

·제품정격 : 9 ~ 34 Vdc, 600 mA

3. 인증범위

본 인증서는 위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·사용주위온도 : $-20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55\text{ }^{\circ}\text{C}$

5. 인증(변경)사항

없음

6. 그 밖의 사항

·사용설명서 참조

·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2015 년 1 월 30 일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